

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93
------	-----

2007년 8월 31일  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
(2007년 8월 3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건강국장 이정관)

- 가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-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등 지급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,
  - ‘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’의 명칭이 ‘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’로 변경됨(1999.07.26)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사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남중)

<총괄부문>

- 『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』 제명 변경과 관련 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일부자구를 수정하고
- 농산물잔류농약 정밀검사 결과 ‘부적합’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등 지급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.

<세부사항>

제명변경에 대한 의견

- 『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』를 『서울특별시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』로 제명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자구수정에 대한 의견

- 자구수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명칭변경에 대한 의견

- “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”의 명칭이 “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”로 변경(1999.07.26)됨에 따라 공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
- 공사의 명칭이 개정된 시점이 8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제6조제2항 삭제에 대한 의견

-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등 지급규정이 유효기간(1999년 12월 31일) 만료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
- 1999년 조례 제정당시 부칙으로 ‘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’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재에 와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.
- 조례 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변경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□ 향후 검토사항

- FTA협정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과 일부 농수산물에 있어 과다 농약검출이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확대·강화하고 있음.
- 2001년 이후 농림부산하 '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'에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,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품질인증제를 마련하고 있으며,
- 일본(예, 가고시마현)과 중국(예, 베이징시)의 경우,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,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있어
- 이에 우리시에서도 가칭) '서울시농수산물품질인증제'를 도입하여 서울시가 책임지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  - 5. 토론요지 : 없 음
  - 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미구성
  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  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  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- 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